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

언어치료사 및 놀이치료사 파트타임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언어 및 놀이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치료사 파트타임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0. 11. 10.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.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

❒ 채용내용

채용직종	채용형태	인원	주요 업무	지원 자격
언어치료사	**파트타임**	**○명**	- 언어발달지연 진단 및 치료 - 발달검사 및 해석상담	* 치료(상담) 관련 학과 졸업자로 언어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 * 경력자 우대
놀이치료사	**파트타임**	**○명**	- 놀이평가 및 치료 - 발달검사 및 해석상담	* 치료(상담) 관련 학과 졸업자로 놀이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 * 경력자 우대

❒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(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)는 채용하지 않습니다.

1)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)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
3)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. 전형방법 및 일정

구 분	전 형 일 정	비 고
모 집 공 고 및 **[1차] 서류전형**	2020. 11. 10.(화) ~ 11. 25.(수) 16:00까지 ① 센터메일(nccic0756@hanmail.net) 접수 (메일제목 <00치료사 – 000응시>라고 명시)	*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0. 11. 25.(수)	*홈페이지 공지
[2차] 면접전형	2020. 11. 26.(목) 15:00 **미추홀구 센터 4층**	
최종 합격자 발표	2020. 12. 1.(화)	

※ 전형일정은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

3. 제출서류

지원 시 제출서류	면접 시 제출서류 (면접대상자에 한 함)
①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 ※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경력증명서(사본) 1부 (관련증빙서류 포함) ③ 자격증 사본 1부	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※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※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준으로 함 (채용 시 경력증명서 원본제출)

※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14일까지 반환가능하며 이후 바로 파기 합니다.

4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❒ (보수기준)
- 치료 회기에 따라 센터 규정에 따라 지급

❒ (근로조건)
- 근무개시일 : 2020. 12. 2.(수) 이후
- 근 무 시 간 : 파트타임, 비상근
  ※ 첨부된 지원서에 **활동가능 요일과 시간**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근 무 장 소 :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22)
- 기 타 문 의 : 상담전문요원 ☎032)884-0756 내선 ⑤

5. 기타사항

○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합니다.

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채용 취소 및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 끝.